

제품환경 관리물질 운영규칙

(SEC Registration No. 0QA-2049)

2026년 9월 4일 (30판)

삼성전자 주식회사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1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머 리 말)
- 제 2 조 (목 적)
- 제 3 조 (적용범위)
-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제 5 조 (운영 및 관리기준)

제 2 장 제품환경 관리물질 운영규칙

- 제 6 조 (제한물질)
- 제 7 조 (보고물질)

부 칙

- Appendix-1 : 협력회사 Eco-Partner 인증제도
- Appendix-2 : 물질별 예외사항
- Appendix-3 : 정밀분석 물질 목록
- Appendix-4 : 협력회사 Eco-Partner 인증양식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머리말)

삼성전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제 환경규제 법규를 준수하며,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부품 및 제품은 본 규칙의 세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물질과 그 세부규정은 국제 환경규제 법안 및 시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 되었다.

제 2 조 (목 적)

본 "제품 환경관리물질 운영규칙(0QA-2049)"은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부품이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부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적용범위)

- 본 규칙은 기본적으로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당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모든 제품·부품에 해당 된다
 - * 제품 : 당사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완제품(외주 완제품, 매입상품)
 - * 부품 : 당사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포장재, 배터리, 원부자재 포함)
- 본 규칙은 기본적으로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되, 적용범위는 해당 환경관리 물질별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환경관리물질
국내외 환경 규제와 사내 환경안전 기준에 따라 유해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에서 관리하는 물질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3

2. 환경관리물질의 구분

가. 제한물질 : 환경관리물질 중 외부 법적 규제, 안전성 이슈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자체적으로 관리 수준을 설정하고 제품 내 사용을 원천 금지하거나 특정 농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물질

A. 규제물질 : 제한물질 중 국내외 법률, 국가 표준, 국제 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명확한 허용 기준이 수립되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물질

a. 살생물질 : 화학적·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유해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 등)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i.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 제거가 주기능인 혼합물 및 화학제품(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

ii.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물물질을 사용했으나 주기능이 별도인 제품(항균필터, 항균브러쉬 등)

b. 식품접촉물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 중이거나 접촉이 예상되어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i. 음식물 또는 음용수를 먹거나 담을때 사용하는 것

i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c. 오존층파괴/지구온난화 물질 : 지구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해 제조·수입·사용 및 배출이 규제되는 물질

i.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성층권 오존층을 화학적으로 훼손하는 물질

ii.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B. 자발적 저감물질 : 제한물질 중 현재 법적 규제는 없으나, 향후 규제 법제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당사가 자체적으로 관리 수준을 정하여 저감하는 물질

나. 보고물질 :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나 향후 법적 규제 편입이 유력시되거나,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제품 내 특정농도 이상 포함시 사용량 및 함유 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고 사내외에 보고해야 하는 물질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4

3. 예외사항

제한물질의 예외사항은 EU RoHS Directive에서 결정한 사항 및 기타 환경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당사 제품의 품질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항으로 분류하여 그 시행을 유예 함

4. 균질재질(Homogeneous materials)

단일재질로 구성된 부품의 최소 구성단위를 의미하며, 절단, 분쇄 및 연마 등과 같은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서로 다른 물질로 분리될 수 없는 조성이 균일한 재질을 의미함

5. 관리농도

규제물질 분석 시 사용 제한된 물질에 대해 분석오차와 불순물 함유 등을 고려한 최대 허용농도이며
 관리농도는 정밀분석에 의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관리농도 초과 시 규제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당사 납품을 금함.
 또한 사용금지로 규정하는 물질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본 규칙의 제6조의 관리농도를 표현함에 있어, "합계"란 열거된 항목의 합계가 관리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은 각 물질이 관리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6. 정밀분석

대략적인 농도를 분석하는 Screening분석 (XRF 분석 등)과는 달리 정밀도·정확도가 높은 분석장비로 무기물은 ICP, IC, UV/VIS, 유기물은 GC/MS 장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함.

* 유기물 : 플라스틱, 고무, 잉크 등 탄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유기 화합물'을 의미함

* 무기물 : 금속, 세라믹 등 유기물을 제외한 화합물의 총칭으로 '무기 화합물'을 의미함

* CV-AAS: Cold Vapor-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 AFS: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ry

* UV-VIS: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 C-IC: Combustion Ion Chromatography

* HPLC :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Ultra Violet detection)

* DMA : Direct Mercury Analyzer

*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 IAMS : Ion Attachment Mass Spectrometry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5

7. 정밀분석 DATA
ISO 17025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국제표준시험법에 의해 발행한 정밀분석 성적서를 의미한다.

8. 원재료 성분표
균질재질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CAS No.(EC No.), 함유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Mill Sheet, Material Declaration 등)

9. 외주 완제품
ODM·OEM 협력회사 및 완제품임가공을 모두 포함한 외주 생산방식이며, 완제품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의미한다.

제 5 조 (운영 및 관리기준)

- 1. 당사 환경관리물질의 관리방법은 제한물질, 보고물질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해당 물질들은 "적용 일정"에 제시된 시점부터 사용을 금지하며 관리 기준 및 방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 2. 대체방법이 없는 경우 관리시점을 대체방법 개발 및 적용시점까지 유예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3. 신규개발 부품 및 매입상품은 환경관리물질 사용현황(협력회사 제출자료)을 서류상으로 유해화학관리물질 시스템(e-CIMS)에 등록하고 그 결과가 당사 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주) 정밀분석 물질은 정밀분석을 통해 관리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해야 하며, 그 외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정밀분석 Data를 요구하지 않지만, 사용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당사 요구 시 협력회사는 정밀분석을 통해 관리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제 2 장 제품환경 관리물질 운영규칙

제 6 조 (제한물질)

1. 본 관리 기준은 제품 및 제품 구성품(Articles) 내 균질물질(Homogeneous Materials) 단위로 적용함

- Article : 제조 과정을 거쳐 고유의 형태를 갖추으로써, 화학적 성분보다 그 모양으로 쓰임새가 결정되는 모든 부품 및 완제품

- Homogeneous Material : 전체적으로 균일한 성분을 가져,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부품의 최소 재질 단위

2. 제한물질 목록

가. 규제물질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Cd)	모든부품		80mg/kg	2005년1월	EU/Korea/China RoHS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1mg/kg(용출)	2020년11월	EU REACH
			폴리머 *주3)	75mg/kg	2020년10월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배터리 *주4)		10mg/kg	2006년9월	EU/China Battery
2	납과 그 화합물 (Pb)	모든부품		800mg/kg	2005년1월	EU/Korea/China RoHS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1mg/kg(용출)	2020년11월	EU REACH
			폴리머 *주3)	90mg/kg	2015년9월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배터리 *주4)		40mg/kg	2024년8월	EU/China Battery
3	수은과 그 화합물 (Hg)	모든부품		800mg/kg	2005년1월	EU/Korea/China RoHS
		배터리 *주4)		1mg/kg	2006년9월	EU/China Battery
		모니터, 노트북	산화은 버튼셀, 알칼라인배터리, Zinc Carbon배터리	5mg/kg	2021년9월	EU Battery
4	페닐수은 화합물	모든부품		100mg/kg	2017년10월	EU REACH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5	6가크롬과 그 화합물 (Cr6+)		모든부품		800mg/kg *주5)	2005년1월	EU/Korea/China RoHS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1mg/kg(용출)	2020년11월	EU REACH
				천연가죽	3mg/kg	2009년6월	EU REACH
6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포장재 *주6)		합계 80mg/kg	2001년6월	EU/Korea/China PPWR
7	PBBs		모든부품		각 800mg/kg	2005년2월	EU/Korea/China RoHS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사용금지	2009년6월	EU REACH
8	PBDEs		모든부품		각 800mg/kg	2005년2월	EU/Korea/China RoHS
9	프탈레이트	BBP, DBP, DEHP, DIBP	모든부품	의료기기 포함	각 800mg/kg	2018년7월	EU/Korea/China RoHS
		BBP, DBP, DEHP	피부접촉부품 *주1)	폴리머 *주3)	합계 1000mg/kg	2020년10월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DIPP, DMEP, DnHP, DPP, DIHP		섬유 *주2)	1000mg/kg	2020년11월	EU REACH
10	PCBs, PCTs, PCNs		모든부품		사용금지	2004년5월	EU POPs, 스위스 ORRChem
11	석면과 그 화합물		모든부품		사용금지	2009년6월	EU REACH
12	포름알데히드 *주7)		모든부품	의료기기 제외	방출량 0.08mg/m3	2026년8월	EU REACH
			목재부품	HWPW-CC/VC	0.05mg/kg	2004년5월	USA TSCA
				PB	0.09mg/kg	2004년5월	USA TSCA
				MDF	0.11mg/kg	2004년5월	USA TSCA
				Thin MDF(8mm이하)	0.13mg/kg	2004년5월	USA TSCA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75mg/kg	2015년9월	EU REACH
13	아조계 화합물	아조색소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사용금지	2009년6월	EU REACH
		아조염료			1000mg/kg	2009년6월	
14	니켈과 그 화합물		피부접촉부품 *주1)	표면처리, 외장금속	0.5µg·cm ⁻² ·week ⁻¹ *주8)	2020년3월	EU REACH
15	유기주석 화합물	TBT,TPT,DBT	모든부품		1000mg/kg	2012년1월	EU REACH
		DOT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31	염화벤질 화합물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1mg/kg	2020년11월	EU REACH
32	잔류 솔벤트				3000mg/kg		
33	기타 아릴아민				30mg/kg		
34	퀴놀린				30mg/kg		
35	PFHxA 및 그 화합물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개 별 0.025mg/kg	2026년7월	EU REACH
					합계 1mg/kg		
				모든 섬유 *주2), 천연가죽		2027년7월	
36	미네랄오일 (MOAH/ MOSH)	MOAH 1~7 aromatic rings	종이용 인쇄잉크 *주11)		1000mg/kg	2025년1월	프랑스 순환경제법
		MOAH 3~7 aromatic rings			1mg/kg		
		MOSH 16~35 aromatic rings			1000mg/kg		
37	Perchlorates		배터리 *주4)		0.006mg/kg	2021년9월	EPEAT, USA California AB 826
38	Tris (2,3 dibromopropyl) phosphate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사용금지	2009년6월	EU REACH, 스위스 ORRChem
39	Tris(aziridinyl)phosphinoxide						
40	2,4-dinitrotoluene		모든부품		1000mg/kg	2027년5월	EU REACH
41	POPs	Aldrin, Chlordecone Dicofol, Dieldrin Endrin, Heptachlor Hexabromobiphenyl HBCDD, HCB, HCBd alpha- beta- gamma-HCH, Mirex, PeCB, PCB, PCDF PCDD, PCNs, Endosulfan Toxaphene, DDT, Chlordane	모든부품		사용금지	2019년7월	EU POPs
		PFHxS			개 별 0.025mg/kg		
		PFOA *주12)			합계 1mg/kg		
		PFOS, PFOSF					
		tetra-, penta-, hexa- hepta-, decaBDE			합계 200mg/kg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41	POPs	Dechlorane Plus	모든 부품	1mg/kg	2019년7월	EU POPs
		UV-328		0.01mg/kg		
		Methoxychlor			1000mg/kg	2011년4월
		단쇄염화파라핀 (Alkanes, C10-13, chloro)		2023년7월		Stockholm convention
		중쇄염화파라핀 (Alkanes, C14~17, chloro)				
		LC-PFCAs		개 별 0.025mg/kg 합계 0.26mg/kg		
		Chlorpyrifos		0.01mg/kg		
42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법규 준수	2016년10월	EU BPR, 한국 화학물질안전법
43	식품접촉물질		식품접촉부품	관련 법규 준수	2022년8월	EU 식품접촉, FDA 21 CFR
44	오존층파괴/지구온난화 물질		오존층파괴/지구온난화물질 부품	관련 법규 준수	2022년8월	Montreal Protocol, UNFCCC

나. 자발적 저감물질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1	납과 그 화합물 (Pb)		모니터/노트북	케이블/코드의 표면코팅	300mg/kg	2021년12월	EPEAT
2	6가크롬과 그 화합물 (Cr6+)		피부접촉부품 *주1)	폴리머 *주3)	0.5mg/kg	2020년3월	
3	프탈레이트	DCHP, DIDP, DINP, DIPP, DMEP, DnHP, DnOP, DnPP, nPIPP	모든부품	의료기기 제외	각 800mg/kg	2020년10월	EU REACH 아동용제품
		19종 BBP, DBP, DCHP, DEHP, DEP, DHNUP, DIBP, DIDP, DIHP, DINP, DIPP, DMEP, DMP, DnHP, DnOP, DnPP, DPHP, DPP, nPIPP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합계 1000mg/kg	2020년3월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3	프탈레이트	DEP, DHNUP, DIHP, DMP, DPP	모바일 *주13),노트북,AI&IoT *주14)		각 800mg/kg	2013년1월	
			TV/모니터	내장케이블 (패널제외)			
		DIDP, DINP	모바일 *주13),노트북,모니터,사이니지		사용금지	2021년12월	EPEAT
		9종 (DEHP, BBP, DBP, DIBP, DIPP, DMEP, DnPP, nPIPP, DnHP)	모바일 *주13),노트북, 모니터,사이니지	포장재 *주6)	합계 500mg/kg	2025년9월	EPEAT
		DIOP	모든부품		1000mg/kg	2023년8월	프랑스 폐기물
		DIHxP(Diisohexyl phthalate)	모바일 *주13)		1000mg/kg	2025년9월	
4	Phenol		피부접촉부품 *주1)	폴리머 *주3)	5mg/L	2020년3월 *주15)	
5	PAHs (24종)		피부접촉부품 *주1)		개별 1mg/kg 합계 10mg/kg	2015년9월	
6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피부접촉부품 *주1)		0.04mg/L	2020년3월	
7	Alkylphenols, Alkylphenol ethoxylates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합계100mg/kg	2020년3월	
8	4-tert-Butylphenol		피부접촉부품 *주1)		사용금지	2020년11월	
9	TBBPA		모든부품		900mg/kg	2008년1월	
10	TPHP		피부접촉부품 *주1)		사용금지	2020년11월	
11	브롬계 난연제		모바일 *주13), 노트북,AI&IoT *주14)		Br 900mg/kg	2012년1월	
			포장재 *주6)			2005년2월	
12	염소계 난연제		모바일 *주13)		사용금지	2012년1월	
			노트북, 모니터, AI&IoT *주14)		Cl 900mg/kg	2019년1월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13	PVC		모바일 *주13), 노트북,AI&IoT *주14)		900mg/kg	2012년1월	
			TV, 모니터	내장케이블 (패널 제외)			
			포장재 *주6)		사용금지	2004년5월	
14	안티몬 및 그 화합물		모바일 *주13), 노트북,AI&IoT *주14)		1000mg/kg	2024년10월	
			TV, 모니터	내장 Harness, 저속신호FFC 케이블 (패널 제외)			
1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모든부품		1000mg/kg	2013년1월	
16	염화코발트		포장재 *주6)		사용금지 Co 1000mg/kg	2011년6월	
17	톨루엔		모바일 *주13), AI&IoT *주14)	포장재 *주6)	16mg/kg	2019년1월	
18	벤젠 *주16)		DS부문 *주 17), SDC *주18)		사용금지	2019년1월	
19	구리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천연가죽, 폴리머 *주3)	50mg/kg	2020년3월	
20	OPP		피부접촉부품 *주1)	섬유 *주2)	100mg/kg	2015년9월	
		천연가죽		750mg/kg			
21	CMC/CMK			300mg/kg			
22	TCMTB			500mg/kg			
23	OIT			100mg/kg			
24	피부자극 유발물질	크롬	피부접촉부품 *주1)	천연가죽	200mg/kg	2021년5월	
		MBT			270mg/kg		
		PPD			330mg/kg		
25	방사성물질		모니터, 노트북		사용금지	2021년12월	EPEAT
26	EU REACH 허가물질 *주19)		모니터, 노트북		사용금지	2021년12월	EPEAT

No.	물질명	관리대상	관리농도	적용일	관리근거
27	1,3-benzenediol	모든부품	1000mg/kg	2024년3월	France 폐기물발생제품법
28	PFAS	모바일 *주13),노트북, 포장재 *주6) 모니터,사이니지	사용금지	2026년5월	EPEAT

*주1) 2주 이내에 10분씩 3번 이상 또는 30분씩 1번 이상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품 (예, 휴대폰케이스, 시계줄, 이어팁 등)

주2)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를 포함

주3) 합성가죽,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등

주4) 배터리셀 또는 셀과 패키지가 결합된 단위 제품

주5) IEC 62321-7-1에 따른 금속코팅의 시험결과가 Negative 또는 0.1 ug/cm2 미만 검출 시 기준 만족

주6) 제품의 보관, 보호, 처리 및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위

주7) 미국향 출하제품의 경우 'TSCA'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만족 시, 본기준을 만족 하는것으로 간주한다. (팔레트 등 포장용 합성목재 제외)

주8) EN 1811:2023 따라 관리농도 0.5 µg·cm⁻²·week⁻¹ 는 0.88 µg·cm⁻²·week⁻¹ 이하 검출 시 기준 만족으로 판단

주9) 할로젠은 불소(F), 염소(Cl), 브롬(Br), 요오드(I)를 말함

주10) EU외 국가에 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적용일 이후 신규로 개발되는 모델에만 해당함

주11) 일반 소비자용 포장재, 인쇄물(매뉴얼, 보증서 등)만 해당

주12) 이식형 의료기기기限 적용 예외

주13)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제품

주14) AI 스피커, 사물 인터넷 기기 및 무선 공유기 등

주15) 해당 적용일 이후 신규로 개발되는 모델에만 해당

주16) 1차 검증: E-CIMS 부품 심사時 MSDS, Self-CheckSheet로 벤젠 물질 함유 여부 검증, 2차 검증(함유時): 제3자 기관 통해 정밀 분석 진행

주 17) Memory 사업부, Foundry 사업부, S.LSI 사업부

주18) Samsung Display Co., Ltd.

주19) <https://echa.europa.eu/authorisation-list>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14

제 7조 보고 물질

향후 규제가 예상되는 물질로, 농도에 상관없이 해당 물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no	물질명	관리대상	비고
1	방사성 물질	모든 부품	-
2	Triclosan		-
3	PFRs (Triphenyl phosphate)		-
4	EU REACH SVHC 후보물질 *주1)		http://echa.europa.eu/web/guest/candidate-list-table
5	EU REACH 제한물질		https://echa.europa.eu/substances-restricted-under-reach
6	내분비계 교란물질		-
7	Br·Cl·P Compounds	플라스틱, PCB	Sweden chemical tax
8	IEC 62474 substances	모든 부품	https://std.iec.ch/iec62474/iec62474.nsf/Index?open&q=060313
9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https://www.oecd.org/chemicalsafety/portal-perfluorinated-chemicals/
10	CLP물질(Annex VI, Table 3)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annex-vi-to-clp
11	PVC 첨가제		INVESTIGATION REPORT ON PVC AND PVC ADDITIVES (ECHA, Ver 1.0), Annex1
12	방향족브롬계 난연제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89b22150-28d1-a745-5f8d-29791433dd52
13	Terphenyl hydrogenated(PHT)		https://echa.europa.eu/registry-of-restriction-intentions/-/dislist/details/0b0236e1862d9f

주1) EU REACH SVHC 후보물질은 매년(2회 이상) 업데이트 되며, REACH 주관기관인 유럽환경청의 최신 List를 참조하여 사용여부 확인

※ REACH SVHC 후보물질 (SVHC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EU REACH 규제에서 CMRs(발암,돌연변이, 생독식성),PBT(난분해성, 생체누적성, 독성), vPvB(고난분해성, 고생체누적성)물질 및 동일한 위험성 있다고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물질이며 부품 중량 기준으로 0.1% 이상 함유 시 법적 정보제공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 그 미만 함유한 경우라도 10조에 따라 당사에 보고하여야 함

→ CMRs(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 vPvB(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Appendix-1 : 협력사 Eco-Partner 인증제도

1. 목적

삼성전자 거래 모든 협력사는 제품·부품 및 원재료에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환경규제 완벽 대응 할 수 있는 환경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한다. Eco-Partner 인증이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제품·부품(원재료)에 환경관리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 가능하다고 인정한 협력사를 말한다.

* Eco-Partner :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환경관리 활동 (Ecology + Economy 접두어)

2. 적용범위

삼성전자에서 판매목적으로 개발되는 모든 제품·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해당된다.

* 금형, 설비, 공정소모품, Software, 고객사 지정 부품, 타사 브랜드 제품, Mock-up 거래 협력회사 및 삼성관계사는 관리대상 제외

3. 인증기준

삼성전자의 제품 환경관리물질 운영규칙(0QA-2049)의 관리기준 부합여부 및 협력사 환경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단, 나.항에 포함되는 협력사는 환경관리시스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가. 인증기준

구분	평가항목		유효기간
	제품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적합	80점 이상	2년
미인증	적합	80점 미만	거래불가
	부적합	-	

* 재평가 Penalty : 1차 1개월 내 재평가, 2차 6개월간 거래중단, 3차 영구 거래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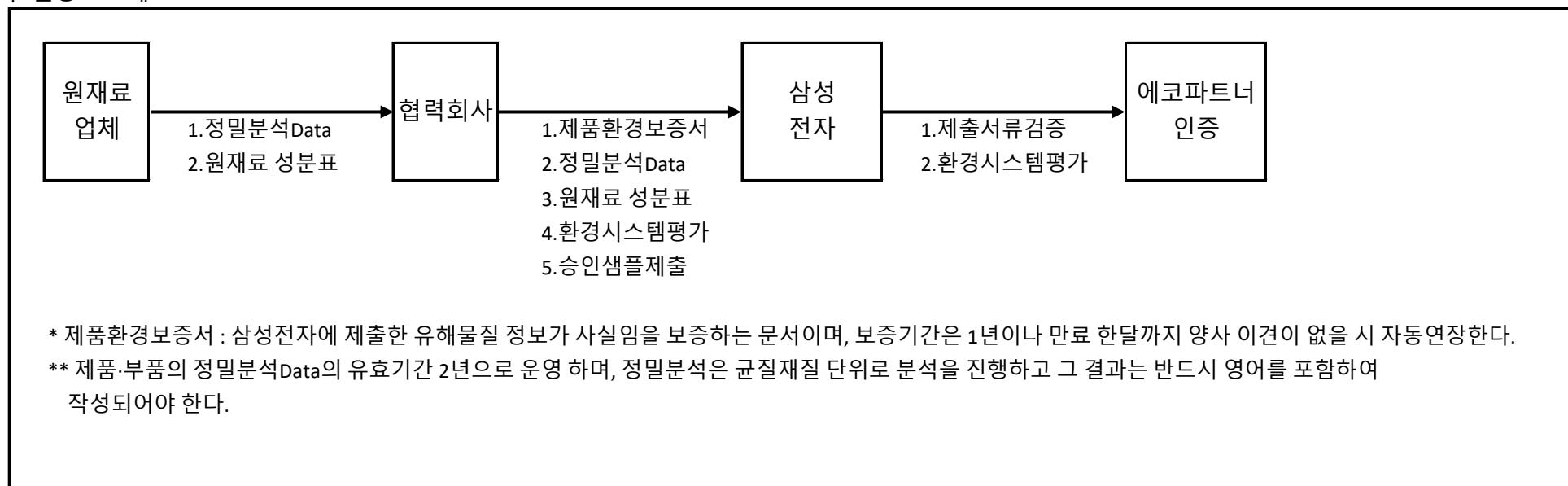
현장 방문 평가 : 거래코드 기준 제조현장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16

나. 환경관리시스템 평가 제외 대상

- 협력회사관리 업무규칙(00Q3-0015K) 제7조 3.5항에서 규정하는 국내/해외 글로벌 대기업 등 협력사
 - 국내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위공지) 또는 자산총액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차다 출자자인 기업
 - 해외 대기업 : Forbes(포브스) 2000 또는 Fortune(포춘) 500 선정 협력사
- 반도체 업종(IC 공급, Wafer·Target·Plating Fab자재) 협력사
- 창고, 대리점, 설계업체, 구매대행사 등 제조 공장이 없는 협력사
- 외주 임가공 협력사(단, 자재를 당사가 100% 제공 협력사 한정)
- 서비스자재만 공급하는 협력사

나. 인증프로세스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17

Appendix-2 : 정밀분석 물질 목록

정밀분석 대상 부품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물질은 RoHS 규제 물질 및 제품 내 함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협력사는 정밀분석을 통해 당사 관리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하는 성적서에는 반드시 영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no	물질명	적용일	관리 대상	대표 시험법	비고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04년7월16일	모든부품	IEC 62321-5	
2	납과 그 화합물			IEC 62321-5	
3	수은과 그 화합물			IEC 62321-4	
4	6가크롬과 그 화합물			IEC 62321-7	
5	PBBs			IEC 62321-6	
6	PBDEs			IEC 62321-6	
7	BBP	2016년7월1일		IEC 62321-8	
8	DBP			IEC 62321-8	
9	DEHP			IEC 62321-8	
10	DIBP			IEC 62321-8	
11	단쇄염화파라핀	2021년7월1일	파워코드, 외장케이블	IEC 62321-14	
12	HBCDD		EPS 포장재	IEC 62321-9	
13	포름알데히드		스피커 목재부품	ISO 12460	
14	Bisphenol A		감열지, 식품접촉 부품	EPA 3550C	
15	할로겐난연제 *주1)		TV/모니터/사이니지 외장, 스탠드	EN 14582	
16	총불소 *주2)	2025년9월1일	모든부품	EN 14582	의료기기, 네트워크 예외
17	할로겐 화합물	2021년7월1일	DS 부문 *주3) 의 모든부품	EN 14582	
18	니켈과 그 화합물(용출)	2021년7월1일	웨어러블 피부접촉 부품	EN1811(금속), EN16128(안경) EN 12472(도금)	
19	비소와 그 화합물			US EPA 3052, US EPA 6010D	
20	비스페놀 A(용출)			EN 71-10, EN 71-11	

no	물질명	적용일	관리 대상	대표 시험법	비고
21	MCP	2021년7월1일	웨어러블 피부접촉 부품	ISO 17070	
22	DCP			ISO 17070	
23	TriCP			ISO 17070	
24	TeCP			ISO 17070	
25	PCP			ISO 17070	
26	DMFu(Dimethylfumarate)			ISO 16186	
27	PAHs(24종)			AfPS GS 2019:01 PAK	
28	잔류 솔벤트			ISO 19070	
29	염화벤질 화합물			EN 17137	
30	아조계 화합물			EN ISO 14362	
31	기타 아릴아민			EN ISO 14362	
32	퀴놀린 염료			DIN 54231	

주1) 할로겐물질이 포함된 물질은 해당 할로겐 물질 정밀분석 성적서로 대체 가능

주2) 총불소는 불소물질 함유여부 확인 목적으로 총불소의 관리농도는 미정

주3) Memory 사업부, Foundry 사업부, S.LSI 사업부

표준명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	등록 No	개정 No	PAGE
		0QA-2049	30	19

Appendix-3 : 물질별 예외사항 (제품 내 관리물질 예외)

1) RoHS물질 예외사항 : 세부내용은 Partner-eCIMS 시스템 게시물 참조

2) RoHS물질 이외 제한물질 예외사항

예외조항		제품 카테고리	만료일
PF-1	사진평판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혹은 반사방지 코팅 내 함유된 PFOS	-	-
PF-2	필름/종이/인쇄 평판용 사진코팅 내 함유된 PFOS	-	2015.12.31
PF-3	비장식성 6가 크롬 도금 mist 방지제 내 함유된 PFOS	-	-
AT-1	Piezo buzzer 세라믹 내 함유된 안티몬	IoT	
AT-2	폴리머 재질 제조에 사용되는 촉매제 내 함유된 안티몬	휴대폰	2012.1.31
AT-3	기포방지 및 이물제거를 위한 광학 유리 내 첨가제 내 함유된 안티몬	-	-
AT-4	Resistor Chip 및 Varistor 내부 Resistive layer에 특성 구현을 위해 사용된 안티몬	-	-
AT-5	고융점 또는 저융점 온도 솔더 내 함유된 안티몬	-	-
AT-6	열전자소자 부품에 사용되는 n형 반도체(Bi ₂ (Te, Se) ₃)와 p형 반도체((Bi, Sb) ₂ Te ₃) 열전도 사용된 첨가제 내 함유된 안티몬	-	-
BE-1	특정 성능 발휘를 위해 커넥터 등에 사용되는 베릴륨 합금	모니터/노트북/모바일/ 사이니지 제외	
P-1	Lead crystal glass로 만들어진 포장재 다음의 경우 glass packaging은 기준농도 초과를 예외 인정(Commission Decision 2001/171/EC) (a) 제조 과정에서 납, 카드뮴, 수은 또는 6가 크롬을 의도적으로 투입하지 않음 (b) 재활용원료 추가로 농도한계를 초과할 수 있음	포장재	-
DP-1	의료용 이미징 장치(medical imaging applications)에 사용되는 Dechloran plus	의료기기	2030.2.26
UV-1	디스플레이 polarizer내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에 사용되는 UV-328	디스플레이	2030.2.26

Appendix-4 : 협력회사 Eco-Partner 인증양식

제품환경보증서(국문)	Letter of Warranty and Representation(ENG)
제 품 환 경 보 증 서 수 신 :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자회사 회사명 : _____ (이하 "당사"라 함) 1. 당사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가. 당사는 환경관리물질과 관련 모든국제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나. 당사는 지속적으로 귀사의 "제품환경관리물질운영규칙(0QA-2049)"의 개정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다. 당사는 귀사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부품/원재료/포장재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와 데이터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증합니다. 2. 당사가 귀사에 위의 사항(1번)에서 보증한 의무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적 비용, 판결, 명령 뿐만 아니라 추가 검사비용, Line-stop, 재작업 등의 내부 비용과 벌금, 리콜, 서비스 처리, 보상 등 외부 Claim 비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해 책임질 것을 보증합니다. 3. 당 보증서의 효력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하며, 보증 만료일 한달 전까지 양사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4. 당 보증서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며,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당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의 공인된 대표자로서 서명합니다. 서 명 : _____ 날 짜 : _____ 이 름 (직위): _____ 회 사 명 : _____ 주 소 : _____	Letter of Warranty and Representation ("Letter") To: Samsung Electronics Co., Ltd. ("SEC") and its affiliated companies From: _____ ("Company") 1. Company hereby warrants and represents as follows: A. Company guarantees full compliance with all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substances with environmental impacts. B. Company guarantees full compliance with the latest version of Samsung Electronics Standards for Control of Substances with Environmental Impacts within Products "Samsung Environmental Standards, 0QA-2049" in controlling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C. The documents and data sheets on the substances with environmental impacts contained in Company's suppl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roducts, parts, components, raw materials and packaging materials, are accurate and truthful. 2. Company agrees to defend, hold harmless, and indemnify SEC from any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Company's failure to comply with the above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counsel fees and legal costs, judgments, orders, awards, as well as costs associated with additional inspections, line-stop, re-work assignments, product recalls, product service and repair, compensation, and/or any damages arising out of and/or related to any such claims. 3. This Letter shall be effective from _____ to _____, and thereafter,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each additional year unless SEC or Company objects such renewal in writing at least a month prior to an expiration date. 4.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Letter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English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eoul,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for both SEC and Company. The undersigned i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Signature: _____ Date: _____ Print Name and Title: _____ Company Name and Address: _____
 제품환경보증서	 Letter of Warranty